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포함 사항 추가 등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4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포함사항 추가 등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24.

다. 회 부 일 : 2026. 7.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역방송 지원사업이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방송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포함사항 추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9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③ ~ ⑧ (생략) <u><신설></u>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u> <u>11. 지역방송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u> <u>12.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u> ③ ~ ⑧ (현행과 같음) <u>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역방송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¹⁾
- 현행법상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 총 26개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가 최대출자자인 지역MBC 16개사와 지역민영방송사 10개사, 지역라디오 3개사로 구분됨.

지역MBC (16)	부산MBC, 대구MBC, 울산MBC, MBC경남, 포항MBC, 안동MBC, 대전MBC, MBC충북, 광주MBC, 전주MBC, 여수MBC, 목포MBC, MBC강원영동, MBC춘천, 원주MBC, 제주MBC
지역민영 방송사 (10)	OBS, 부산경남방송(KNN), 대구방송(TBC), 울산방송(UBC), 대전방송(TJB), 청주방송(CJB), 광주방송(KBC), 전주방송(JTV), G1방송, 제주방송(JIBS)
지역라디오 (3)	경인방송,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글로벌광주방송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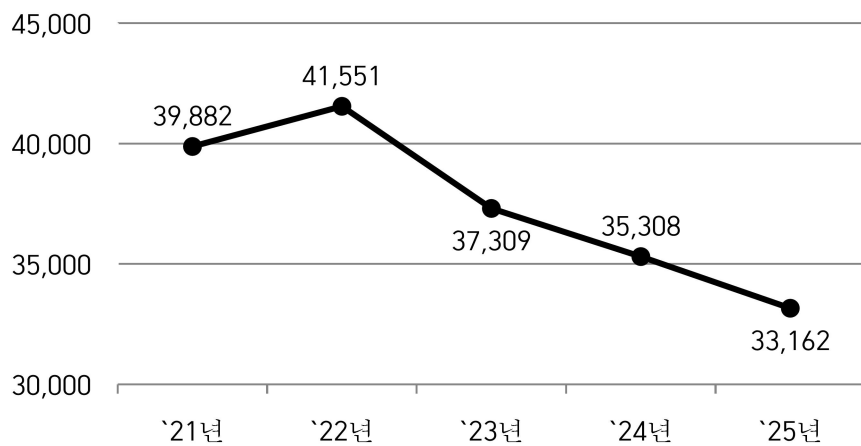
-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2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6.)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은 하락 국면에 있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1% 하락하면서 2022년 이후 3년간 감소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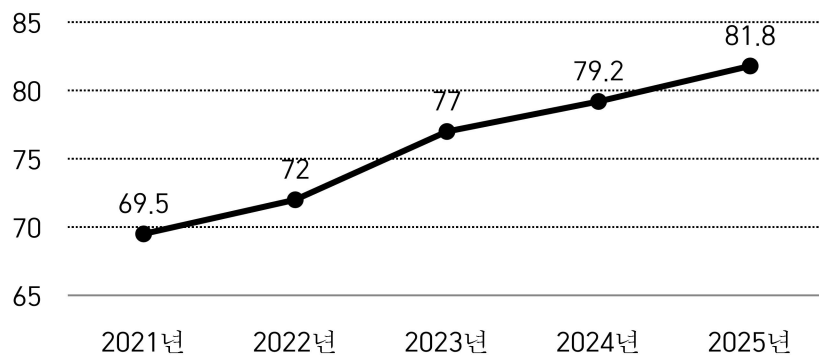
< 최근 5년간(2021~202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 현황 (단위: 억원) >



자료: 202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2026.6.)

- 이에 반해 OTT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디어로서 사회적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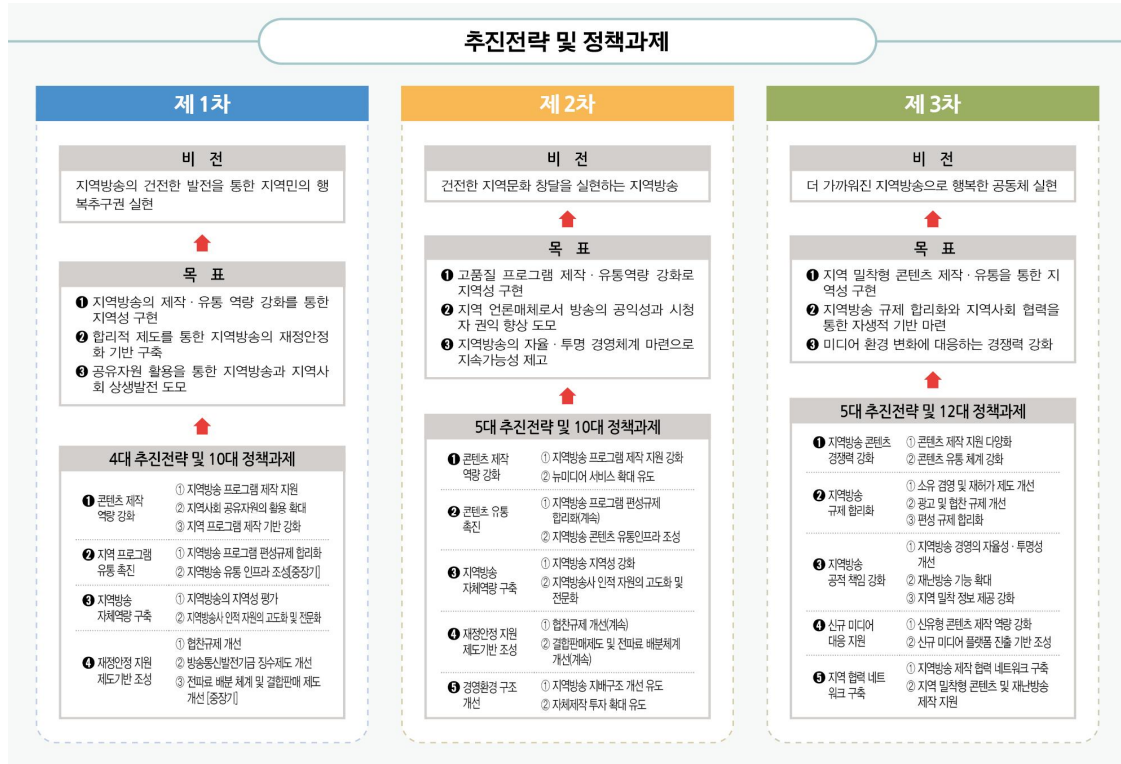
< 최근 5년간(2021~2025년) OTT 이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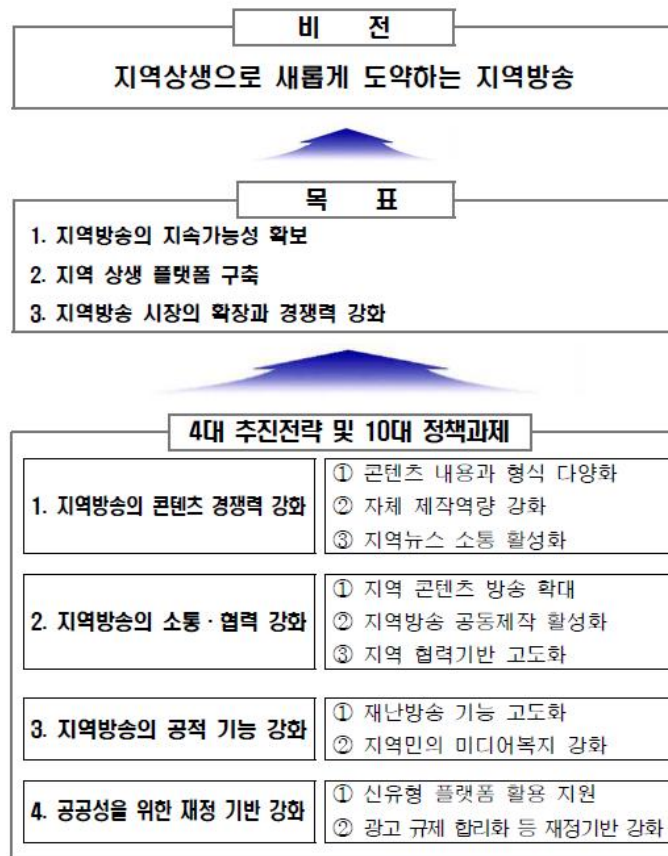
자료: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5.12.)

- 이처럼 미디어 지형이 OTT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지역방송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경우 지역방송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방송이 현장 밀착형 재해·재난정보 전달자로서 지역 특화 보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할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재난방송 인프라 등 취재·보도·제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안 제7조제9항은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인데, 지역방송계획 자체가 3년 주기로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안 제7조제9항이 없더라도 지역방송계획에서 3년 단위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1차~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제3차 계획에서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제4차 계획에서 ‘유튜브 등 신매체 체계적 활용 지원’ 등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4차에 걸친 지역방송계획 모두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역량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해왔고,
제3차 및 제4차 계획에서 재난방송 기능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2026년)>



자료: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2024.1.)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용) 지역방송이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및 콘텐츠 육성을 지원하고, 공적 책무인 재난방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방송 지원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다년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 (문화체육관광부: 불수용)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안 제2항제11호의 '지역방송 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함.
 - ①방송콘텐츠산업 육성은 「정부조직법」 제39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비디오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문체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②문체부는 「방송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3년부터 6차에 이르는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있으며, ③제6차 계획('23~'27년) 추진전략에는 지역방송 진흥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④문체부는 해당 계획에 근거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기획·개발-제작-유통-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수행('26년 예산 989억원)하고 있음.
- (한국방송협회: 수용)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의 중요

성이 여전히 높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 육성,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5차 지역방송 지원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됨.

- (지역MBC 전략지원단: 수정 수용) 개정안의 실효성을 위하여 지역 콘텐츠의 디지털 플랫폼 입점 및 유통 지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원 등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및 취재 제작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지역 대학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